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북 노 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1108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03129)

TEL:708-4412~3
FAX:708 - 4415

서북노 제80-46호

2023. 8. 7.

수 신 : 당회장 및 노회원(목사, 장로 총대)

제 목 : 제81회 정기노회 소집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제81회 정기노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당회장 및 노회원께서는 필히 참석하시기
바라며, 아래사항을 숙지하시어 서류 제출 및 해당 부서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81회 노회 일정

- ① 일 시 : 2023년 10월 24일(화) / 오전 9시 ~ 오후 12:30(안수식 : 오후2시)
- ② 장 소 : 장위중앙교회(김학수 목사 시무 / 서울 성북구 장월로 101, ☎ 917-7950)

2. 각부회 일정

- 노회 회의안 자료용 보고서(사업경과 및 회기 결산보고)는 **2023. 9. 30.(토)**까지
노회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 서	회의 일정	장 소	안 건
훈 련 원	9/9(토) 오후2시	상신교회	항존직 피택자교육
국내선교부	9/21(목) 오전11시	노회사무실	전도목사 청빙관련 현의 건 면담
고 시 부	9/16(토) 오전10시	장위중앙교회	81회 노회고시 실시
교육자원부	9/20(수) 오전11시	노회사무실	신학생 수업계속 추천 면담(신대원1,2학년)
정 치 부	10/4(수) 오전10시	장위중앙교회	81회 현의서류 검토 및 면담 * 면담 : 위임, 담임, 부, 교육, 전도목사 청원자, 목사안수 청원자, 기타 신임 청원자
공천위원회	10/5(목) 오전11시	노회사무실	81회기 공천 (시찰장)
감사위원회	10/6(금) 오전10시	노회사무실	노회 정기감사

※ 첨 부 : 정기노회 지시사항. 끝.

노 회 장 유 순
서 기 신 성



▶ 별첨 <지시사항>

1. 시찰장님께

① 헌의서류 마감 : **2023년 9월 13일(수)까지**

1) 노회규칙에 의거 **서류접수 기일(노회 20일 전) 경과時 접수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서류

- ★ 1) **시찰보고서** / 임시당회장 명단, 각 교회 상황보고서 (**노회총대의 주소, 연락처 변경사항 확인**)
- 2) 성찬위원 / 분병·분증 각 1안
- 3) 헌의서류 및 목록
- 4) **미비서류와 상회비 미납교회의 서류는 일체 접수할 수 없어 반려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당회장님께

① 귀교회 노회원(목사,장로총대)께 **【노회소집공문】** 을 필요한만큼 복사하셔서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노회 목사·장로 총대 및 교회 현황보고서’**를 노회홈페이지에서 **Down** 받아 **반드시 시찰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헌의서류 양식은 노회홈페이지(sbbp.or.kr) 자료실에서 Down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헌의서류는 **접수기일 경과 및 상회비 미납의 경우에는 노회결의에 의해 접수할 수 없습니다.**

⑤ **4월 노회시 당회록검사(미자립교회 : 제직회의록 검사) 받지 않은 교회 당회 서기께서는 노회참석 시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의서류 구비서류

번호	청원서	첨부서류
1	교회신설 및 가입청원	청원서, 개척신설교회의 성장계획서, 교회에 대한 건물 사용승낙서, 교회재산현황보고(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원본 첨부), 교인서명부, 인근교회 동의서, 유지재단가입확인서 각 1통 교역자의 청빙서 및 이력서사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총회 교회개척훈련수료증 또는 등록증 사본
2	교회 분립(합병)청원	청원서, 교인서명부, 분립(합병)결의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각 1통
3	교회 이전 청원서	청원서, 당회결의서, 제직회 동의서, 교회재산현황보고(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원본, 공증서 첨부) 각 1통
4	목사시무 사임 청원	청원서, 당회결의서 각 1통
5	위임목사 청원	청원서, 청빙서,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 서명날인 명단, 이력서,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연금계속납입증명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각1통
6	담임/부/교육목사청원	청원서, 청빙서(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서명날인한 명단), 이력서,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당회록과 제직회 회의록 사본, 연금계속납입증명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각 1통
7	담임목사 연임청원	청원서, 연금계속납입증명서, 당회록과 제직회의록 사본(미조직교회는 제직회의록 사본만)
8	부/교육목사 연임청원	청원서, 당회록 사본, 연금계속납입증명서 각 1통
9	전도/기관목사 청원	청원서, 청빙서, 이력서,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연금계속납입증명서, 제직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국내선교부 회의록 사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각 1통

번호	청원서	첨부서류
10	전도/기관목사 연임청원	청원서, 제직회(이사회) 결의서 또는 재직증명, 사역보고서(1년간) 국내선교부 회의록, 연금계속납입증명서 각 1통
11	목사안수 청원	청원서, 청빙서 사본, 이력서 사본, 목사고시합격증 원본, 교역경력증명서 각 1통
12	담임전도사사무 청원	청원서, 당회(없으면 제직회)의 시무결의서 사본, 이력서,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전도사고시합격증(또는 확인서) 원본,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각 1통
		※타노회의 경우 - 목사후보생이전증서(또는 전소속노회 확인서) 첨부
13	담임전도사사무 연임청원	청원서, 당회(없으면 제직회)의 시무결의서 사본 각 1통
14	장로선택 허락청원	청원서, 당회결의서(미조직교회는 제직회의록 사본) 각 1통
15	장로고시 연기청원	청원서 1통

▶ 현의서류 준비시 참고사항

1) 교회 예배처를 이전할 경우는 “교회이전허락청원”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2) 교회신설(가입) 청원

★ 헌법 정치 제2장 10조 (지교회의 설립) /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 노회 결의사항

- ① 교회설립, 노회가입시 교회자산(임대보증금)이 서울지역은 3천만원, 기타지역은 2천만원 이상이 된 교회를 가입허락하기로 하다(제79회-2022. 10. 25)
- ② 교회신설(가입)시 경유기관(시찰회, 국내선교부)에서는 교회재산현황을 보고 받아, 재정부를 경유(확인)하여 정치부로 보내기로 하다.(제63회-2014. 10월)

3) 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 전도사의 자격 (헌법 정치 제 7장 49조)

★ 제4항 헌법 정치 제28조에 의거 목사(위임, 담임, 부목사, 전도, 기관)청빙과 연임청원 시에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 **당회의 조직 및 폐지** (헌법 정치 제10장 64조, 65조 /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4조 참조)

● **교육목사 관련**

- ① 교육목사는 노회의 연권회원이나, 당회와 제직회원권은 없다.
- ② 조직교회(위임,담임)목사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4, 1항에 의거 교육목사 청빙 시 안수 후 청빙청원을 할 수 있으나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을 할 수 없다.
- ③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다.
- ④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3. 노회고시 및 목사후보생에 대하여

① 고시부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16일(토) 오전10시 / 장위중앙교회**

청원 내용	장로고시청원	전도사고시청원	목사후보생고시청원
고시 과목	성경, 헌법-교라 정치 권장 예배모범, 면접 (단, 서울북노회 성서신학원 졸업자는 학과시험 면제)	성경, 헌법(교라 정치 권장 예배모범), 교회사, 면접	성경, 요리문답, 면접
제출 서류	청원서(당회장추천서), 이력서(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의회록사본, 노회교육 이수필증, 성서신학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통	청원서, 이력서(사진), 성서신학원(또는 신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앙고백서 각1통	청원서 및 당회장추천서, 세례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이력서(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신앙고백서 각 1통

※ 참고자료 : 한국장로교출판사 **“종합고시문제집”**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노회에서 목사후보생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차후2년까지** 유효하도록 한다(43회 노회 결의사항)

※ ‘훈련원 교육 이수 필증’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장로고시 청원을 허락하기로 하다(54회 노회 결의사항)

※ 장로 임직 : 헌법 정치 제42조 제1항에 근거 장로로 피택 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 상황(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심각단계)에 따라 정기노회가 연기되었다면 헌법 정치에 근거한 교육일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금회에 한하여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은 받게 하되 4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노회의 판단에 따라 노회고시를 치를 수 있으나 반드시 4개월 교육 이수 후 임직해야 한다.(총회헌법해석/접수번호 199)

② 교육자원부 - 신학생 수업계속추천 면담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20일(수) 오전11시 / 노회사무실**

- 참석대상 : 본노회 소속 재학생 {신대원 1, 2학년(신학수업계속허락 청원자만 면담)}

- 현의청원 서류

번호	청 원 서	첨 부 서 류
1	신학수업계속허락청원	청원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통

4. 참 고 사 항

1. 교회 단독목회 전도사는 노회에 참석방청토록 하고, 여비는 해 교회에서 부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대 여러분은 모든 회무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찰서기를 통해 서기부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노회와의 연락 사무는 노회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